

이천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규칙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17·10·13 규칙 제608호

제1조(「이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88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며, 제124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하고, 제146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며, 제155조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163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며, 제165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하고, 제9조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며, 제15조제3항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하고, 제19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하며, 제21조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6항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31조제1항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며,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※비고란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이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이천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규칙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